

WTO 農業協定의 履行評價와 短期所得林產物 市場에 미친 影響¹

朱繼源^{2*} · 鄭秉憲² · 全炫真² · 金義廣³ · 金畏政²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WTO Agricultural Agreement and its Impacts on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s¹

Rin Won Joo^{2*}, Byung Heon Jung², Hyon Sun Jeon², Eui Gyeong Kim³ and Wae Jung Kim²

要　　約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市場開放에 대한 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需要 및 供給彈性值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最小市場接近 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實行關稅率도 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潛在的 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否定의 效果가 소비에 미친 肯定의 效果를 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輸出이減少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implementation on tariff quotas and tariff cuts committed in the WTO as result of Uruguay Round(UR) negotiations and to examine impacts of reductions in agricultural protection agreed in the UR on major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s. The implementation of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was analysed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statistics. The impacts of implementation on tariff cuts and tariff quotas on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s were estimated by using supply and demand elasticities from previous studies and data 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fter UR. The quantities of Chestnut, Pine nut and Jujube imported by the system of tariff quota did not exceed the committed quotas over the five years from 1995 to 1999. The current level of applied rates on imports of non-timber products is much lower than that of bound rates, which will be maintained until the year 2004. It is estimated that increase in imports after UR reduced prices and that reduction in prices led to decrease in expenditure and to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It is estimated, however, that production level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rise in imports a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n production exceeded positive effects on consumption. Exports of most non-timber forest products decreased after UR even though non-timber forest products could gain access to the export markets at the lower tariffs as a result of UR.

Key words : non-timber forest products,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pplied rates, bound rates, tariff quota, Uruguay Round

¹ 接受 2001年 4月 9日 Received on April 9, 2001.

審查完了 2001年 5月 22日 Accepted on May 22, 2001.

² 林業研究院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³ 廉尚大學校 農科大學 山林科學部 Division of Forest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 연락처자 E-mail : joorw@foa.go.kr

서론

1999년 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開 僚 會 議가 국제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 제3세계 국가들의 불만과 조직적인 저항, 국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WTO 반대 투쟁 등에 의해 결렬되어 WTO의 뉴라운드가 출범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에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협상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농산물도 공산품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그룹의 주장은 제외되었지만 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가급적 폭넓은 자유화, 국내보조금분야에서는 상당수준 점진적인 감축에 잠정 합의하는 수준에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既設定 議題인 農業分野에 대한 협상은 계획대로 2000년 3월 개최된 WTO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2001년 3월까지 협상의 내용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후 회의부터 농업협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 국가 WTO에 제출한 제안서에 의한 市場接近分野에 대한豫想爭點들을 볼 때(WTO, 2001),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협상의 결과가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대폭적인 관세인하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농산물, 특히 고율의 관세구조를 가진 단기소득임신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기소득임산물의 시장접근분야를 중심으로 7년 반 동안 진행되어 1994년 4월 타결된 UR 농산물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에 대한履行計劃과 實績을 검토하였다. 또한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事後的으로 分析하였다. UR 농산물협상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이행실적 등

은 관련 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 등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은 기준에 국내에서 수행한 김의경 등(1998), 김재성과 김의경(1997), 김재성 등(1996), 김재성 등(1998), 윤여창 등(1993) 선행연구의 품목별 需要 및 供給彈性值와 UR이후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 統計値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UR 농산물협상이 무역자유화와 농업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범의 제정에 중점을 두었다 면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협상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협상의 이행평가 및 UR협상이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진행 중인 농산물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UR농산물협상의 주요 합의내용

UR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분야의 논의는 수입을 제한하는 모든 수입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砍감하여 교역을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關稅化에 합의하였다.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의 경우에는 國內外 價格差만큼 關稅相當值(Tariff Equivalent : TE) 혹은 高率關稅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통상적인 관세부과에 의한 수입품목은 양허품목의 경우에는 讓許稅率을 기준으로, 비 양허품목의 경우에는 1986년 9월 1일 현재 實行稅率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키로 하였다. 관세상당치와 관세율 인하에 대한 이행기간과 감축율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선진국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의 기간동안 단순평균 36%를, 개도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24%를 연도별로 均等하게 減縮토록 합의하였다(표 1).

표 1. UR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분야 합의내용.

구 분	합 의 내 용
감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한품목 : 관세상당치(TE) · 기 개방품목 : 양허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품목은 실행세율(1986. 9. 1 기준)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1995~2000, · 개도국 : 1995~2004
기준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1988
감 축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단순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이상 · 후진국 : 단순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이상

이와 함께 UR협상 이전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關稅割當制度(tariff quotas)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기준년도 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년도의 연평균 국내소비량의 3%를 1995년에 最小市場接近(Minimum Market Access : MMA)으로 수입을 보장하고 선진국은 6년간, 개도국은 10년간 국내소비량의 5%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수입제한 품목 중 기준기간 동안 국내소비량의 3% 이상을 수입하고 있던 품목에 대해서는 現行市場接近(Current Market Access : CMA)을 인정하고 현행 수입량 만큼은 기본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량을 이행기간 동안 유지 또는 확대로 합의하였다.

WTO 농업협정의 이행평가

1. 이행계획

우리 나라가 1994년 GATT에 제출한 법적 형식을 갖춘 최종 履行計劃書(country schedule)에 의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개도국의 감축율인 24%보다 높은 26.7%의 감축율을 제시하였고¹⁾ 基準年度도 1988~1990년으로 하여 관세 상당치 등을 산출하였다. UR 당시 농산물협상 대상인 단기소득임산물은 HS 10단위로 92개 품목이었으며, 100% 양허되었고 감축율은 單純 平均 13.7%였다.

UR이전 수입제한 품목이었던 밤, 잣, 대추는 最小市場接近에 의해 수입이 개방되었다. 밤, 잣, 대추의 시장개방 履行計劃은 표 2와 같다.

표 2. 밤, 잣, 대추의 수입개방 이행계획.

품목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톤)	
	시장접근 물량내	시장접근물량외		초기년도 (1995)	최종년도 (2004)
		1995	2004		
밤	50%	243.8%(1,634원/kg)	219.42%(1,470원/kg)	1,302.0	2,170.0
잣	30%	629.8%(2,960원/kg)	566.82%(2,664원/kg)	31.7	52.9
대추	50%	679.4%(6,445원/kg)	611.43%(5,800원/kg)	155.7	259.5

1) 1992년 최초이행계획서 제출시 공란으로 남겨두었던 품목과 양허가 제시되지 않았던 품목의 관세감축율을 0%로 가정하여 평균 감축율 24%를 제시하

UR이전 수입이 개방되었던 표고버섯통조림, 송이버섯통조림, 죽순통조림, 마롱글라세, 밤 통조림 등 가공제품과 땅감, 기타 견과류 등 7개 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 차이를 고려하여 50% 이상의 高率關稅를 부과토록 합의하였다. 또한 고사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끓감, 도토리, 은행, 호두 등 16개 품목은 종량세가 수입억제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從量稅를 부과하여 수입토록 합의하였다.²⁾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고 수입개방에 의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低率關稅로 수입토록 합의하였다.

2. 이행실적

밤, 잣, 대추의 最小市場接近履行實績은 표 3과 같다. 이행 첫해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것은 최소시장접근물량의 100%가 수입되었고, 대추도 1997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수입되었다. 밤은 1995~1999년 평균 최소시장접근물량의 약 10.6%만이 수입되었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소시장접근 이상을 수입시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부과 후 수입되는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목과의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밤의 경우에는 中國에서 수입되는 밤의 대부분이 군밤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 군밤용 시장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이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고율의 관세상당치 등에 의해 양허한 품목에 대해 가공도를 달리하여 높은 관세를 회피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냉동밤의 경우 적용 관세율이 30%로 생밤의 최소시장접근 물량

였으나 이를 품목이 최종 이행계획서에 추가적으로 양허되었기 때문에 감축율이 26.7%로 높아졌다.

2) 실제 운용은 종가세와 종량세 중 높은 것을 적용함.

표 3. MMA품목의 시장접근 이행계획 및 실적.

품목	구 分	1995	1996	1997	1998	1999
밤	이행계획(A, 톤)	1,302.0	1,398.4	1,494.9	1,591.3	1,687.8
	실수입량(B, 톤)	300.0	74.4	121.5	183.3	116.5
	이행율(B/A, %)	23.0	12.8	8.0	11.5	6.9
잣	이행계획(A, 톤)	31.7	34.1	36.4	38.8	41.1
	실수입량(B, 톤)	31.7	34.1	36.4	38.9	41.1
	이행율(B/A, %)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추	이행계획(A, 톤)	155.7	167.2	178.8	190.3	201.8
	실수입량(B, 톤)	152.7	167.2	105.9	190.3	201.8
	이행율(B/A, %)	98.1	100.0	59.2	100.0	100.0

주 : 밤과 잣은 미달각기준, 대추는 전대추 기준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표 4. 단기소득임산물 관세율 체계.

단위 : 개, %

HS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수	기본세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06(산수목, 菓)	21	8.0	8.0	15.9	15.9	8.0	8.0
07(채소)	18	30.6	29.8	54.8	86.9	36.1	35.4
08(과실, 견과류)	13	29.4	16.9	59.5	39.8	29.4	16.9
11(밀가루, 전분)	1	8.0	8.0	23.8	23.8	8.0	8.0
12(채유용 종자와 과실)	4	2.0	0.0	4.0	0.0	2.0	0.0
13(식물성 엑스)	3	4.7	3.2	17.2	16.1	4.7	3.2
14(기타식물성 생산품)	16	5.6	6.6	11.2	12.3	5.6	6.6
20(채소과실의 조제품)	7	25.7	21.2	56.2	50.9	25.7	21.2
21(기타의 조제식료품)	1	8.0	8.0	56.4	56.4	8.0	8.0
23(조제사료)	2	5.0	5.0	55.0	94.0	5.0	5.0
전체	86	16.5	20.7	34.0	62.1	17.6	23.1

주 1. 기본세율과 양허세율은 2000년도 세율임.

2. 가중평균은 1999년도 수입액에 의한 가중 평균임.

3. 밤, 잣, 대추 등 최소시장접근 품목은 제외.

내 적용 관세율 50%보다 낮고 국내 제과용 밤 원료가 부족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 수입품목을 제외한 단기소득임산물을 수입할 때 실제 적용되는 實行關稅率은 양허세율과 기본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기본관세율은 단순평균 16.5%이며, 수입액 가중평균 20.7%이다. 이에 반해 양허관세율은 단순평균 34.0%이며, 수입액 가중평균 62.1%이

다.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표고버섯³⁾을 고려한 실행관세율은 단순평균 17.6%이며, 수입액 가중평균 23.1%이다. 따라서 실행관세율과 기본관세율이 표고버섯이 포함된 HS 7류를 제외하고는 동일

3) 2000년도 표고버섯(HS 0709.51.3000, 신선/냉동)의 기본세율은 30%, 양허세율은 94%이나 수입증가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WTO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0년도 조정관세는 80%임.

하며 양허관세율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기본세율이 실행세율이라는 관계는 UR농산물 협상에서 약속한 2004년 이행기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소득임산물의 關稅引下에 대한履行約束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해당 시장에 미친影響은先行研究에서 추정한需要 및供給彈性值와價格 및物量의 통계치를 이용하여事後의으로分析하였다. 1995년을 전후, 즉 1990-94년의 기간과 1995-99년 기간동안의 품목별 평균수입량의 변화가價格에 미친 영향을計測한 후 UR이 없었을 경우의 품목별需給量의 변화에 의한생산액, 소비지출액 및 후생변화를推定하여分析하였다. 이를 위해 UR이후에도 국내 생산 및需要彈性值은 변화가 없으며, UR협정에 의한 수입개방 및 關稅率減縮이 없었을 경우 UR이전인 1990/94의 기간 동안 수입추세가 UR이후인 1995/99의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假定하였다.

UR에 의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첫째, UR이후 시장개방에 의한潛在的價格變化(ΔP)를 식(1)과 같이推定하였다.

$$\Delta P = \epsilon_m \cdot \frac{\Delta M}{M} \cdot P \quad (1)$$

여기서 ϵ_m 은 수입가격탄성치, ΔM 은 UR전후의 수입증가량, M 은 UR이후 평균수입량, P 는 UR 이후 평균가격을 나타낸다. 품목별輸入價格彈性值는선행연구가 없어 식(2)와 같이 수요 및 공급탄성치를 이용하여計算하였다.

$$\epsilon_m = \frac{1}{\epsilon_{dp} \cdot \frac{D}{M} - \epsilon_{sp} \cdot \frac{S}{M}} \quad (2)$$

여기서 ϵ_{dp} 와 ϵ_{sp} 는 각각 수요 및 공급탄성치를 의미하며, D 는 UR이후平均消費量, S 는 UR이후平均生產量을 나타낸다.

둘째, 추정된 잠재적 가격변화와 수요 및 공급탄성치를 이용하여 UR협정에 의한 생산량의 변화(ΔS) 및 소비량의 변화(ΔD)를 식(3), 식(4)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Delta S = \epsilon_{sp} \cdot \frac{\Delta P}{P} \cdot S \quad (3)$$

$$\Delta D = \epsilon_{dp} \cdot \frac{\Delta P}{P} \cdot D \quad (4)$$

이와 같이 추정한 가격, 생산량, 소비량의 변화치를 UR협상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하고, 이를推定值와彈性值들을 이용하여 UR이후 수입개방이 미친 밤, 잣, 대추, 호도, 표고의 生產額과消費支出額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厚生變化值를 계산하였다. 시장개방의影響分析에 사용된 탄성치 및 주요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표 6은 주요 품목별로 추정한 영향분석 결과이다. UR이후 농업협정의 이행에 따라潛在의으로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품목은 호도와 표고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UR이후 수입량이 UR이전 수입량보다 크게 증가되었고輸入價格彈性值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들이다. 밤, 대추, 잣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수입과 낮은 수입가격탄성치로 가격하락 효과가 작았던 것으로推定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결과가 대폭적인 關稅減縮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로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가격하락이豫想된다.

표 5.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치 및 주요 통계치.

단위: 원/kg, 톤

품목	수요 탄성치	공급 탄성치	수입가격 탄성치	평균가격 (1995/99)	평균생산량 (1995/99)	평균소비량 (1995/99)	평균수입량 (1995/99)	수입증가량 (UR전후)
밤	-0.1708	0.1965	-0.0065	2,020	107,479	77,579	223	203
잣	-0.5967	0.7583	-0.0092	8,778	821	827	10	10
대추	-0.2600	0.3342	-0.0246	6,530	11,143	11,302	164	163
호도	-0.8722	0.4800	-0.2526	9,203	1,133	1,618	494	411
표고	-0.3165	0.4267	-0.3266	21,870	3,734	4,290	964	247

UR이후 수입개방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된 것은 潛在的 價格 하락폭이 커던 표고와 호도에서, 그리고 생산량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밤에서 크게 나타났다. UR이후의 輸入增加로 인한 潛在的 生產量은 표고의 경우 연 평균 133톤, 밤은 125톤, 호도는 114톤, 대추는 91톤, 잣은 6톤 정도減少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품목별 소비량증대 효과도 潛在的 가격하락 폭이 커던 호도, 표고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품목 중 호도를 제외하고는 生產量減少가 소비량 증가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UR협상에 의한 市場開放으로 품목별 生產額은 표고의 경우가 가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호도, 대추, 밤, 잣 순이었다. 특히 표고의 경우에는 매년 약 100억원의 生產額減少效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消費支出額은 호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된 것으로 計測되었다. 호도의 경우에는 수입증가로 인한 價格下落의 효과보다 소비량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消費支出額이 증가된 것으로 推定되었다. 따라서 分析 品目の 경우 UR에 의한 수입개방 결과 수입증가에 의한 생산액 감소효과가 소비지출액 감소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UR협정 이후 短期所得林產物의 수입증대로 인해 생산은 크게 影響을 받아 큰 폭으로 축소된 반면에 消費增大 효과가 이를 상쇄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UR이후 輸入擴대로 인해 生產者剩餘는 감소하였으나 消費者剩餘는 增加하였다. 이는 UR 이후 수입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 비해 소비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품목 개별생산자가 받은 被害가 개별 소비자가 얻은 利益보다 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UR협상 이후 우리나라 주요 短期所得林產物의 수출은 UR이전보다 오히려 감소된 품목이 적지 않았다. 밤의 경우 UR이후인 1995/99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輸出量은 UR이전인 1990/94년 기간동안의 연평균수출량에 비해 5,334톤 減少되었고, 표고는 313톤 정도 감소되었다. 비록 잣의 경우 4톤, 대추의 경우 3톤, 호도의 경우 8톤 정도 輸出量이 增加되었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량 증가는 타 품목의 수출량 감소보다 相對的으로 작았다. 따라서 UR협상에 의해 수입은 擴大되었으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은 國際競爭力이 향상되지 못하여 증가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結 论

우리나라의 短期所得林產物 시장은 UR협상 이후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로 모두 開放되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關稅率을 단순평균 26.7% 감축키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른 단기소득임산물의 關稅減縮率은 13.7%였다. 농산물 전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소득임산물의 관세인하폭이 낮았던 것은 UR협상에서 관세율 引下方式으로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평균적 인하방식을택했기 때문이었다.

UR이전 輸入制限 품목이었던 밤, 대추, 잣 등의 수입은 최소시장접근 물량이내에서 輸入되었다. 또한 실제 수입품목에 부과되는 實行關稅率도 현재 양허관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적용되고 있으며 UR 農產物協商에서 약속한 2004년까지의 이행기간 동안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실행관세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소득임산물의 關稅引下에 대한 이행약속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R 이후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輸入增加로

표 6. UR에 의한 주요 품목별 시장개방 영향('95-'99년간 평균).

품 목	가 격 (원/kg)	생산량 (톤)	소비량 (톤)	생산액 (백만원)	소비지출액 (백만원)	생산자잉여 (백만원)	소비자잉여 (백만원)
밤	△12	△125	78	△1,535	△766	△1,283	925
잣	△80	△6	5	△116	△26	△66	66
대추	△160	△91	72	△2,395	△1,328	△1,792	1,804
호도	△1,936	△114	297	△3,467	175	△2,303	2,846
표고	△1,832	△133	114	△10,003	△5,164	△6,963	7,756

주 :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없었을 경우 대비 변화치임.

UR 협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국내가격이 下落되어 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消費者剩餘가 증가되는 등 소비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輸入增加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生產額減少가 소비지출액 減少效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의 潛在的 生產者剩餘가 매년 평균 약 124억 원 감소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들 5개 품목이 단기소득임산물의 生產額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기준 약 57.4%임을 감안할 때 모든 단기소득임산물의 生產者剩餘 減少額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豫想된다. 한편, UR 협상에 의해 수출시장의 關稅가 인하되어 수출시장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은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오히려 UR이전 보다 대부분 減少하였다.

농업협정 제20조에 의해 기 설정된 農產物交易改革의 지속을 위한 농산물협상이 2000년도 초부터 개시되어 지금까지 6차례의 특별회의가 開催되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시장접근분야는 關稅引下方法, 協商關稅率, 관세할당제도 등이 주요豫想爭點이 되고 있다. 관세인하방식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은 분야별 자유화, 즉,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세인하의 協商關稅率을 實行關稅率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農產物輸出국들은 최소시장접근에 대해서도 쿼터량의擴大 및 관리방법의 개선과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적용되는 關稅率의 引下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豫想爭點들을 볼 때 진행 중인 농

산물협상의 結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산업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豫想된다. 따라서 協商關稅率을 양허세율로 하고 가능한 한 關稅引下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確保하여야 할 것이며, 관세인하 방식도 농산물 전 품목의 평균적 인하목표를 설정하여 품목별로 關稅引下의 폭에 재량을 確保하는 引下方式을 제시하는 등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산업의 피해를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김의경·김재성·정병현. 1998. 잣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산림과학논문집 57: 77-85.
2. 김재성·김의경. 1997. 임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임업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 7-45.
3. 김재성·김의경·정병현. 1996. 밤·대추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산림과학논문집 54: 214-227.
4. 김재성·김의경·정병현. 1998. 표고버섯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산림과학논문집 57: 67-76.
5. 윤여창·김의경·손철호·고기연·안소은. 1993. 주요 산림부산물의 생산 및 수요에 관한 장기 예측과 정책대응 방안연구. 한국임정연구회 용역보고서. 213pp.
6. WTO. 2001.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On-line at 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negs_bkgnd.pdf (Accessed in March, 2001).